

##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김 병 석\*·이 계 영\*

###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재해(출·퇴근도상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용무를 보는 경우 등) 및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발생된 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 둘 다를 가진 '출·퇴근'의 이중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출·퇴근은 공적인 측면을 가진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출·퇴근이고 따라서 출·퇴근재해는 일자리에 부수된 것이지 단독의 고유한 위험이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위험은 모든 근로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근로자들은 도시의 비대화로 과거보다 먼 출·퇴근거리를 다녀야 하며,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 2. 국내외 산재보험 비교 고찰

산재보험의 최초 법제화 시기는 1884년 독일을 기점으로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 1890년 이전에 이미 산재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후 1910년까지 산재보험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는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터키 등의 국가에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개시하면서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표 1은 국외의 산재보험제도의 입법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국외의 산재보험제도 입법 시기

구 분	국 가	비 고
1884 ~ 1890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4개국
1891 ~ 1900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8개국
1900 ~ 1910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호주, 미국, 뉴질랜드	8개국
1911 ~ 1920	스위스,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캐나다	5개국
1921 ~ 1930	대만	1개국
1931 ~ 1940	싱가포르	1개국
1941 ~ 1950	멕시코, 터키	2개국
1951 ~ 1964	한국, 아이슬란드	2개국

자료 : 산재보험제도 국제비교 연구, 박찬임, 2002

### 2.1 국내·외 산재보험제도의 특징과 구조

미국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는 강제보험제도로서 일반 사회보험체제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회보험과 관련되지 않은 독립된 제도로서 주별로 존재하고 그 적용 방식과 관리운영방식도 주별로 다소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는 역시 강제보험제도로서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속해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통합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국단일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규를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려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결국 공동된 규정만을 사회법에 담고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보험료와 관련된 규정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와는 상당 부분 관리운영을 통합하여 사회보험제도에 속해 있고, 고용보험제도와는 상당 부분 관리운영을 통합하여 노동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같이 운영되지만 세부적으로 적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와는 독립된 제도로서 존재한다. 또한 공무원 등 일부 특수지역 종사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제도로서 운영된다.

위 3개국 중에서 산재보험제도에서 민간보험회사의 관리운영을 허용하거나 민간의 자

발적 산재보험제도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뿐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이렇게 민간 보험회사의 진입이 허용된 것은 미국 산재보험제도 도입의 논리가 근로자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두었기 보다는 사업주의 정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적용대상 범위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의 적절한 치료와 보상, 생활보장을 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단 임금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소규모 공사(총면적100㎡이하, 2천만원 미만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현재 적용제외하고 있다. 표2는 국내외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대상별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임금	전체근로자	○	○	○	○
	농림업	●	○	●	●
근로자	건설	○	○	○	●
	외국인	●	●	●	●
	가내근로자	●	○	▲	×
사업주	사업주	△	△	▲	▲
	임원	△	△	×	×
자영업	자영농민	▲	○	▲	×
	자영업자	△	△	▲	×
특수 직종	보험/판매	●	●	없음	●
	독립계약자	●	●	없음	×
공무원	공무원,군인	특수지업보험	○	특수지업보험	특수지업보험

○ : 당연적용    ● : 당연적용이지만 일부 적용 제외있음.    △ : 임의적용  
▲ : 임의적용이지만 일부 적용 제외있음.    × : 적용제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포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별 관리제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일본과 같이 가내노동법의 제정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가내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마련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중소기업주, 특수형태 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대상 집단으로 포괄할 뿐 다른 집단을 산재보험내로 포괄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재보험의 개념이 재해보험으로 변화하고 사업주 및 자영업자에게 까지 산재보험이 확대될 경우 필연적으로 산재보험에 관리제도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비록 취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무급가족종사자

등) 작업에서의 재해 위험에 있는 다른 인구집단에게까지 산재보험이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3 관리운영 주체

미국의 경우 비용부담주체를 보면 크게 고용주가 내는 경우와 본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으며, 독일의 비용부담 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이다.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은 농업자 사회보험의 하나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자영업자인 농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보조가 제공되고 있다.

일본은 산재보험제도의 구성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국가이다. 일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와 사업주, 농민,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부담 방식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 농민, 자영업자 등은 본인이 임의 가입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하도급이 자주 행해지는 분야는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인 건설업인데 이때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맡겨놓고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표 3 산재보험제도의 비용부담주체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근로자	전체근로자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농림업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건설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
	하도급근로자	고용주	고용주	원수급인	원수급인
	가내근로자	고용주	고용주	×	×
사업주	사업주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자영업	자영농민	본인	본인+정부	본인	×
	자영업자	본인	본인	본인	×
특수 직종	보험/판매	고용주/본인	고용주/본인	없음	고용주/본인
	독립계약자	고용주/본인	고용주/본인	없음	×
공무원	공무원, 군인	국가	국가	국가	국가

## 3. 출·퇴근재해의 실태 및 문제점

### 3.1 출·퇴근재해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출·퇴근 재해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출·퇴근 재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와 관련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청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교통사고 통계'와 사고원인별 통계 중 '출·퇴근시의 사고'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출·퇴근재해의 정도를 가늠 할 수 있을 뿐이다.

표 4 년도별 교통사고 추세

(단위:명)

분석지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발생건수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사망자수	6,563	6,376	6,327	6,166	5,870
부상자수	346,987	342,233	340,229	355,906	338,962

근로자의 출·퇴근 수단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의 양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도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빙판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거나 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출·퇴근 시 입을 수 있는 재해의 대부분은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시간대별 교통사고 추세

(단위:명)

시간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6시-08시	발생건수	13,159	12,786	12,893	13,164	13,490
	사망자수	544	513	513	505	510
	부상자수	20,285	20,179	20,403	20,713	21,203
08시-10시	발생건수	19,344	18,754	18,009	18,022	18,703
	사망자수	453	454	440	392	383
	부상자수	29,767	29,403	27,972	28,152	28,673
18시-20시	발생건수	27,434	26,224	26,340	26,366	27,174
	사망자수	877	900	888	877	795
	부상자수	41,868	40,698	40,585	40,244	41,274
20시-22시	발생건수	23,955	23,122	23,290	23,103	23,804
	사망자수	702	723	663	628	606
	부상자수	37,366	36,605	36,589	36,531	36,984

또한, 우리나라의 출·퇴근 재해보호제도는 출·퇴근 재해를 당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즉 일반 근로자인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등 특수직역 종사자인가에 따라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진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도중의 사고(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밖이다. 다만,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

하였다거나 사업주의 특명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공무원 등의 경우는 작업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도중의 사고(출·퇴근재해)는 전면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받고 있다.

## 3.2 출·퇴근재해 적용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

### 3.2.1 출·퇴근개념 등의 정립

우선 출·퇴근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이라 함은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를 반복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출·퇴근행위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출·퇴근행위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출·퇴근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출·퇴근 행위와 업무상재해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업무연관성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주거와 근무장소, 합리적 경로, 경로에서의 사적인 행위 등의 개념정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출·퇴근 중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상에서도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이동경로를 벗어난 사적행위의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개념정의를 필요하다.

### 3.2.2 보험료 납입의 주체

산재보험법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한 보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적인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재해 적용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전히 이상적일 수 밖에 없고 기존 산재보험 재정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재정부담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주로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3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모순되고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 즉 출·퇴근재해의 인정은 출·퇴근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발생율을 증가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출·퇴근재해의 사고비용을 출·퇴근자가 아닌 사용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출·퇴근근로자의 사고방지의 경제적 비용은 감소하여 이로 인해 사고율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출·퇴근재해의 인정으로 자동차보험 등의 사적보험을 대체 또는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 출·퇴근재해의 인정은 산재보험효율의 상승이나 산재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3.2.3 자동차보험과의 연계

대부분의 출·퇴근 중 사고는 교통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부분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면책약관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가 전면 적용된다면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재정악화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수납하는 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구상금 회수에 쉽지 않은 등 관리비용 및 소송비용의 증대라는 문제가 있다.

### 3.2.4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출·퇴근행위를 업무로 본다면 출·퇴근비용, 임금의 산정방법, 출·퇴근중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리적 행사 가능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출·퇴근행위가 순수한 사적인 영위와 업무상 행위와의 중간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순수한 사적영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사업주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완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 3.2.5 사고비용 분담과 사고예방

사고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의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는 사고의 비용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관한 법원칙, 즉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가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 무책임원칙(no liability)에 취한다면 가해자들은 사고방지를 위해 아무런 주의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반대로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노력 수준과는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해야 할 무과실책임원칙(strict liability)에 의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주의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노력의 정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사고비용의 부담비율의 변화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방지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가해자의 사고비용 부담비율이 증가하면 사고로 인해 배상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므로 가해자의 사고방지 주의노력이 증가하게 되고 주의노력 수준의 증가는 사고발생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가해자의 사고비용 부담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피해자의 사고비용 부담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주의노력 수준은 감소하고 이는 사고발생확률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사고비용 부담비율이 증가할 경우 가해자의 주의노력 수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사고발생확률이 줄어드는 효과와 피해자의 주의노력의 감소로 사고발생확률이 증대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전체적으로 사고발생확률이 줄어들지의 여부는 미지수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비용부담비율의 증감에 따른 사고발생률의 변화는 이러한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그림 1은 사고비용 부담비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의노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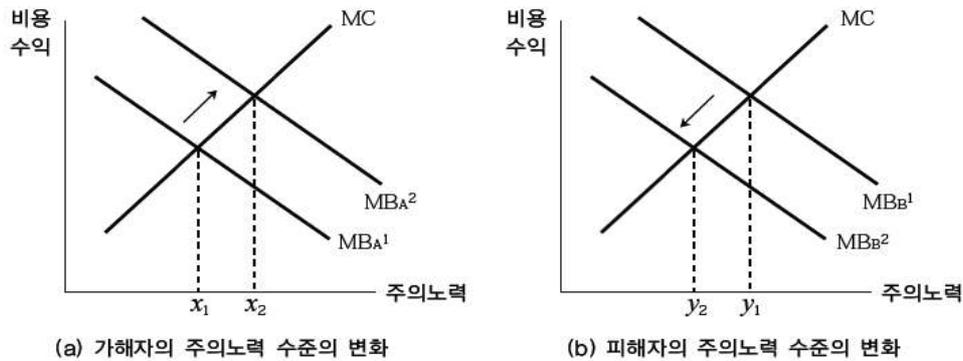


그림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의노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 4. 출·퇴근재해의 제도 개선방안

### 4.1 보호내용 및 수준

출·퇴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은 출·퇴근재해의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의 필요성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와 출·퇴근재해를 그 보상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은 그대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보호수준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2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

기존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른 개별요율제와 동종업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개별요율실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경험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대하여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예방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업무상재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직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경우 업종에 따른 차등요율제와 경험요율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1/1000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시 출·퇴근재해로 인한 재해빈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에 대한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에 대한 보험요율을 이원화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출·퇴근재해 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다.

### 4.3 출·퇴근재해의 비용부담 주체

출·퇴근재해는 어느 정도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이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도 아니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퇴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과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및 일본에서는 국가가 출·퇴근재해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업무와 출·퇴근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공무원과 교원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재해의 제도를 적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로부터는 국가와 근로자도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출·퇴근재해보호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출·퇴근재해보호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와 출·퇴근재해보호제도를 산재보험에 포함할 경우 관리·운용의 효율성 면을 고려하고 노무제공과 출·퇴근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4.4 출·퇴근재해의 관리운영 주체

출·퇴근재해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확대로 볼 수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출·퇴근재해보호제도는 산재보험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의 관리운영은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가 맡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업무는 더 이상 정부에서 관장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행정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를 공사화 하거나 또는 민간부문에 이양하고 정부에서는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감독업무만을 맡아야 할 것이다.

## 5. 결 론

출·퇴근재해에 대한 학설은 현재 '출·퇴근행위'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성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는 소극설과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적극설로 나누어져 있다. 소극설은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근로관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출·퇴근 중 재해는 사용자의 직접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의 재해로서 주거 장소나 출·퇴근수단 및 출·퇴근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업주의 사고방지 노력도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실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가 아직 분명치 않다. 출·퇴근재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

차보험을 통해서 상당수가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실제로 출·퇴근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재원 부담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혹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률을 고려할 때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10% 정도의 사고에 보상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산재보험으로 출·퇴근재해를 보상할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할 유인이 감소하여 재해율의 증가되고, 나아가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출·퇴근재해 및 보장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론적인 면에서의 방향성이나 전망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선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사실자료에 근거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이후에 출·퇴근재해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출·퇴근재해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고려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대한 보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나 평등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나 어떤 방향으로든지 형평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6. 참 고 문 헌

- [1] 박중희외 2명,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연구』, 노동부(2005)
- [2] 박찬임 외),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2003)
- [3] 박찬임외 3명,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04)
- [4]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6)
- [5] 서규석,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0)
- [6] 신태식, 김병석, 『산업재해보상 및 방지론』, 형성출판사(2008)
- [7] 오선균,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법리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04)
- [8] 윤조덕,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적용 확대』, 한국노동연구원(2004)
- [9] 전광석,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역할』, 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논문집(2004)
- [10] 조명우, 『산재취약계층의 규모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6)